

이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연월일 : 2000. 5.

제출자 : 이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
-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사청구인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제정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주민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500명 이상으로 정함(안 제2조).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감사청구 주민수)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500명이상이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